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71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허성무
이성윤 · 최혁진 · 김 현
복기왕 · 안도걸 · 이기현
박지혜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이하 “야영장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업자에게 야영장 시설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9호의2 중 “제20조의2에”를 “제20조의2제1항에”로,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생 략)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이하 “야영장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업자에게 야영장 시설등의 보완 또는 개수 ·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④ <u>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제1항에-----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9의3. ~ 20. (생략)	9의3.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